

## ◎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-115호

「선원법」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(3회)하였으나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01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###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#### 1. 대상

성명	선명	주소	비고
백*진(66.07.10.)	제7002만*호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	

####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처분의 원인사실 : 선원명부의 미공인(2명)
- 근거법령 : 「선원법」 제17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

#### 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 : 과태료 120만원(1회 위반 / 2명) / 2023.10.6.(금)

#### 4. 안내사항

- 납입고지서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(Tel. 064-720-2600)에서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등 부과 및 체납처분
  - 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  - 다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  - 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-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.
- 문의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

(주소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(전화번호) 064-720-2600